전임교원책임시간및초과강의료지급내규

2002. 3. 1 제정 2003. 12. 26 개정 2005. 3. 1 개정 2006. 9.15 개정 2007. 3. 20 개정 2007. 1. 11 개정 2008. 3. 1 개정 2007. 12. 31 개정 2008. 11. 28 개정 2009. 9. 1 개정 2010. 3. 9 개정 2011. 8.17 개정 2012. 2. 20 개정 2013. 6. 20 개정 2014. 8. 20 개정 2014. 11. 18 개정 2016. 6. 22 개정 2015. 12. 16 개정 2017. 2. 14 개정 2019. 2.20 개정 2019. 5. 8 개정 2019. 12. 23 개정 2020. 2.11 개정 2020. 3. 4 개정 2021. 1. 27 개정 2022. 7. 1 개정 2023. 2. 6 개정 2023. 12. 6 개정 2024. 5. 8 개정 2024. 9. 4 개정

- 제 1조(목적) 이 내규는 전임교원이「복무규정」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담당해야할 기본강의(이하 '책임시간'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 및 초과강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12.23>
- 제 2조(책임시간) 전임교원의 학기당 책임시간은 [별표1]과 같다. 단, 외국인교원은 '외국인교원의임용및처우에관한규정'에 따르고, 중점교원은 '중점교원인사규정'에 따른다.<개정 2014.11.18., 2015.12.16., 2017.2.14., 2019.12.23., 2020.3.4., 2022.7.1., 2023.12.6>
- 제 3조(책임시간의 산정) ① 책임시간의 계산은 학점수와 시간수가 동일한 강의를 기준으로 하되, 강의형태에 따라 별표2와 같이 강의시간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.<개정 2014.11.18>
 - ② 책임시간은 정규학기 학부과정만 인정한다(계절학기 제외). 다만,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은 수강인원 3명 이상 과목의 경우 각 학년도에 1과목을 인정한다. 대학

원(특수대학원 포함) 수강인원이 7명 이상일 경우 책임시간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강인원 3명 이상인 과목을 포함하여 한 학기 1과목씩, 최대 1년 2과목만 인정한다.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 책임시간 인정의 경우 실제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목(논문지도, 개인별연구 등)은 제외한다.<개정 2014.08.20., 2019.2.20, 2023.2.6.>

- ③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에서 담당한 강의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「혁신교수법교과목운영내규」제2조에 따른 혁신교수법 적용이 승인된 교과목의 책임시간 계산은 학점수로 한다.<신설 2019.12.23>
- 제 4조(책임시간의 감면) ① 책임시간을 감면 받는 교원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전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본 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
 - ③ <삭제 2014.11.18.>
- 제 5조(초과시간 및 강의료 지급) ① 전임교원(책임시간 감면교원 포함)이 학기당 책임시간(전임교원 9시간, 교육중점교원 12시간)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, 환산이 적용된시수를 기준으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14.08.20., 2014.11.18., 2017.2.14, 2019.2.20, 2023.12.6.>
 - ②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학기단위로 계산하여 학기말에 지급한다. 단, 전임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은 1학기 초과책임시수(인정시수 중 해당학기 책임시수를 초과한 시수)의 경우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.<개정 2014.11.18., 2015.12.16, 2023.12.6.>
 - ③ 대단위 강좌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강의료지급기준을 준용한다.
- 제 6조(책임시간보충) ① 강의 담당시간이 연간 총 책임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년도에 이 미충족 책임시간을 보충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12.6.>
 - ② 미충족 책임시간을 그 다음 학년도까지 보충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보충할 때까지 승급과 연구년 신청을 제한하며, 교내연구비 지원을 중단한다.<개정 2023.12.6.>
 - ③ 재직기간 중 발생한 미충족 책임시간이 있는 퇴직예정교원은 시간강사 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. 공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6.6.22., 개정 2023.12.6.>
 - ④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의 미충족 총책임시간이 학기당 책임시간을 초과할 경우, 그 다음 학기에 미충족 총책임시간에서 학기당 책임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시 간강사 강의료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.<신설 2023.12.6.>
 -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교원이 휴직, 퇴직하는 경우 휴직 또는 퇴직 전에 미충족 총책임 시간에 대하여 시간강사 강의료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12.6.>
- 제 7조(세부사항) 이 내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- 1.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강사료지급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06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,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 내규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, 별표2 개정)
- 2. 이 개정 내규 제 2조 ①항의 단서를 제외한 전단은 2016년 2월말까지 한시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2조제1항, 제5조제2항 및 별표1 개정)

부 칙<2016. 6. 22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2. 14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부 칙<2019. 2. 20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5. 8.>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<2019. 12. 23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2. 11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3. 4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 1. 27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(별표 1)

부 칙<2022. 7. 1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2. 6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12. 6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 5. 8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 9. 4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전임교원 학기당 책임시간 <개정 2013.6.20., 2014.8.20., 2014.11.18., 2015.12.16., 2017.2.14., 2019.5.8., 2019.12.23., 2020.3.4., 2021.1.27. 2022.7.1., 2023.12.6., 2024.5.8., 2024. 9. 4.>

전임교원 학기당 책임시간

구 분	세부구분	책임시간 (주당)	비고
일반교원	전임교원	9	
보직교원	부총장	0	
	처장, 대학교육혁신원장, DS-혁신사업단장, 캠퍼스타운조성단장	3	
	대학원장, 특수대학원장, 학장, 글로벌교육원장, 평생교육원장, 도서관장, 대외홍보실장, 부속유치원장, 부처장, 디지털정보기술원장, 창업지원단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교육혁신성과관리센터장, 덕성미디어센터주간, 기숙사 관장	6	교육중점교원 의경우 9시간 (3시간감면)

[별표 2] 강의시간 환산표 <개정 2014.11.18., 2019.2.20., 2020.2.11., 2024.5.8.>

강의시간 환산표

강의형태	세부구분	강의시간 산출기준	
이론강의	이론	강의시간수	
실험·실습·실기	학점수와 시간수가 같은 경우	강의시간수	
글 답^글 답^글기	학점수와 시간수가 상이한 실험·실습·실기	강의시간수 × 0.67	
현장실습 병행 강의	각 전공 현장학습, 인턴십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강의	학점수	
기타	전공개설미달인원(재학생 40%이상) 수강으로 개설한 강좌	강의시간수 × 0.75	